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노성환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노성환 의원

나. 제안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도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중장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진영)

가. 본 조례안은

- 농촌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이 부족한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통해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의 조건 및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함
<농업인 유형별 연령 적용 요건>

구분	법적근거	연령 요건
후계농어업인	법령	5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법령	40세 미만
중장년농업인	조례	4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농업인	조례	65세 이상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안 제4조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
- 안 제5조는 중장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상호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장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장년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후변화, 특정 농작물 편중에 따른 소득감소, 작목전환 등 농업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 재배기술 교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인구감소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에서, 중장년농업인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고령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 아울러,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